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3.

발 의 자 : 김선민 · 김재원 · 차규근
박은정 · 김준형 · 서왕진
신장식 · 강경숙 · 이해민
정춘생 · 황운하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당음료를 제조·가공·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·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97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4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7.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3조의4에 따른 가당음료부담금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